

한반도의 통일에 따른 예상치안문제와 대비방안

박 기 룬*

◇ 목 차 ◇

-
- I. 서 론
 - II. 분단국 통일사례에서 나타난 치안문제
 - III. 한반도 통일방안에 따른 치안여건과 대비방안
 - IV. 결 어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 론

「한민족 두살림」의 남북한이 서로 대치한채 엄청난 국방비와 정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돌발적인 몰락」에 따라 갑자기 북한을 「접수」하거나 에너지 난 등으로 군사적인 하강국면에 있는 북한의 「마지막 불장난」을 겪게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같은 예측불허의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방의 소식통들은 「북한의 현 상황은 과거 동유럽과 소련이 처했던 상황보다 열악하게 사회 각 부문이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 스스로 공산체계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루어내야 할 과제는 많다.

많은 과제 중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대명제는 그 중요성을 말할 필요 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남북한이 필수적으로 실마리를 찾아 해결해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1975년 베트남이 무력적으로 흡수통일 후 90년대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민주화 결과로 우리와 수교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과도 국교가 정상화 되었다. 특히 90년 독일의 평화적 흡수통일과 예멘의 합의적 통일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94년 예멘은 내부적 갈등을 무력적으로 해결하는 내전을 겪음으로써 다시 한번 통일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였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김정일은 북·미간 핵문제 해결의 경수로 건설을 타결시킴으로써 남·북 관계의 결림돌을 치우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듯이 한편으로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¹⁾'을 94년에 새롭게 발표했으며, 대북경협 추진은 물론 세계화의 대국적 차원에서 조건없는 쌀 제공 등의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정부와 다른 통일논의를 다양하게 확산시키려 하고 있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97년 들어서는 북한의 예측불허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박관념으로 다가오고 있고 96.12월부터 이어지는 일가족 탈출등 불안한 신호들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조짐에 대해 CIA의 퇴임국장인 존 도비치는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침략하거나 엄청난 문제로 인해 내부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반면 프랑스 국방전문가 르세르비는 「루마니아식의 붕괴가 배제될 수 없다」며, 하지만 가까운 시간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현정권은 간접적인 협상에 의존하면서 변화를 꾀할 것이다.²⁾ 라고 평가했다.

가능성 있는 방법은 한국,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나, 우리가 철저한 통일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중국 및 주변 강대국이 언제든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철저한 통일대비적 수립에는 치안문제가 그 중요한 하나가 될 것이고, 따라서 분단국이었다가 지금은 하나가 된 베트남, 독일, 예멘의 경우에서 통일사례와 치안문제를

1) 정부의 새 통일방안은 94년 8.15 경축행사를 통해서 밝혔으며, 그 명칭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나 '민족공동체 방안'으로 약칭되며, 이전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에서 '3 단계 통일방안'을 거쳐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2) 조선일보 「밖에서 본 한국」 '96. 12. 24. p.34.

살펴보고 한반도의 통일에 따른 치안여건과 예상 과제를 연구하여 대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II. 분단국 통일사례에서 나타난 치안문제

1. 분단국 통일사례

가. 베트남의 분단과정과 통일

(1) 월남·월맹의 분단과정

베트남은 19세기 이래 약 80년간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후 1940년에 일본군이 진주하여 5년간 점령통치를 했다.

그 후, 1945년 8월 일본군의 항복으로 영국과 중국이 남북으로 점령 하였는데 프랑스는 먼저 영국과 뒤이어 중국과 협정을 맺어 베트남을 되찾았다.³⁾

1946년 12월 29일 월맹군이 프랑스군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군과 월맹군 사이에 제네바회담에서 「휴전협정」이 성립되어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월맹군, 남쪽은 프랑스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이 휴전협정의 내용이 결국 베트남 분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네바회담의 「휴전협정」에 의하여 1956년 7월 베트남에서 자유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월맹은 독자적인 공산정권수립에 광분하고 있어서 결국 자유총선거는 실현되지 못했다.

1954년 10월 11일 월맹은 호지명이 이끄는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월남은 독자적으로 1955년 10월 국민투표 방식을 통한 선거를 실시하여 고·단·디엠대통령을 선출하였다. 1955년 1월 20일 미국과 프랑스의 협상⁴⁾에 따라 프랑스군은 철수하고 미국이 월남지원을 맡게 되었다.

3)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분단국 통일문제, 1990, P.72.

4) 미국은 베트남군 10만명과 예비군 15만명을 갖추기로 한 프랑스와 베트남측과 합의하고, 이들을 훈련시킬 군사교관을 프랑스군 지휘하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956년 4월부터는 이 훈련을 「미군사고문 지원단(MAAG)」이 맡도록 합의했다.

(2) 월맹의 적화통일

1954년 7월 「제네바협정」에 의해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이 분단되자 베트남 전역에서는 주민의 대이동이 실현되었다. 북에서 90만명의 피난민이 남으로 이동했고, 남에서 9만명의 월맹군이 북으로 철수했다.⁵⁾

그러나 이때 월맹은 약 5천명의 공산당 정치공작원을 월남지역에 잔류시켜 놓았다. 월맹의 전략은 “이들 정치공작원들로 하여금 태업·파업·반정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월남정국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편 국력을 약화시켜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월남을 적화통일 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월남은 이러한 적화통일전략에 대응하여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 나아갔다. 즉 1955년 10월에 출범한 월남정부는 [特別法]을 제정하여 파업을 주동했거나 국가보안을 해친 자에게는 사형·중신형 등 엄벌로 다스렸다.

그러나 월남정부의 강력한 반공정책이 실현되면서 반정부세력은 더 늘어났고, 地下化됨으로써 더욱 어렵게 되었다. 월맹은 적화통일전략을 武力行使로 바꾸어 테러·파괴 행위를 감행했고, 특수훈련을 받은 남부출신 월맹군을 침투시켰다.

최초로 美軍部隊가 월남에 상륙한 것은 1961년 12월 11일이었다.

1962년 2월에 「美軍支援司令部(MAC)」가 창설되었고, 뒤이어 처음으로 베트콩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1964년 5월 9일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軍派越을 호소하게 되었고, 동년 7월 5일 월남은 우리나라에게 軍派越要請을 하게 되었다.⁶⁾ 그러나 戰勢는 호전되지 않았고, 미국내의 反戰論議와 병력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9년 1월 25일 미국의 대통령보좌관 키신저와 월맹의 래·둑·토 사이에 파리에서 비밀협상이 열렸다.

1971년 7월 9일 미국은 「베트남화계획(Vietnamization Program)」⁷⁾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973년 1월 23일 키신저와 래·둑·토 사이에 우여곡절 끝에 「休戰協定」⁸⁾

5)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앞의 책 p.73.

6) 1964. 9.22 한국군 의무부대 1개중대 제1이동의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이 처음으로 파월되었다.

7) 베트남화 계획(Vietnamization Program)이란, 미국은 北部省 방위책임을 월남군에게 인계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군도 1967년 12월부터 1968년 4월까지 완전 철수했다.

8) 「休戰協定」: 1973. 1.29 파리에서 調印. 미군포로석방, 잔류미군철수, 휴전감시를 위한 국제군설치 등 이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월맹은 미군포로 67명을 석방, 미국 민간인, 기술자 8천 5백명을 제외한 모든 주월미군이 철수했다.

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동년 1월 28일 오전 8시부터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휴전 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 6월 13일 美國·越南·越盟·베트콩의 대표간에 새로운 「休戰協定」을 조인하였다.

그래도 월맹군의 공세는 치열했고, 월남은 전선에서 무너지기 시작 했으며, 드디어 1975년 4월 30일 월남군 4개군단이 봉괴되고 베트콩에게 항복하게 되었다.

끝으로 월맹주도의 공산주의체제로의 통일은 체제적 안정을 단번에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정치군사적으로 북출신이 남을 통치함으로써 일관적 정책은 유지될 수는 있었으나, 지역실정과는 무관한 독재적 강압으로 말미암아 통일국가의 정당성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경제적으로 통일비용이라는 문제는 없으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개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는 경제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중이다.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그간의 분단고착에 따른 이질화, 북쪽생활의 남쪽에의 일방적 강요등이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다. 즉 북쪽의 사회주의 생활태도를 일방적으로 남쪽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가해지는 고통과 그것에 대한 정권의 강제까지도 겹쳐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마디로 공산화 통일은 민족해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동서독 통일의 실현

소련의 개혁·개방 열풍이 동유럽권에 거세게 일기 시작하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민주화와 개방화의 합성이 일어났고, 이 열풍은 점차 동독으로 옮아가게 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의 길”은 1989년 가을 동독인들의 집단적인 서독으로의 탈출로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그해 9월부터 10월초 사이에 10만명에 달하는 동독인들이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주재 서독대사관 또는 동서독 경계선을 통해 서독으로 도망쳐 나왔다.

한편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방문하고 호네커에게 개혁·개방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호네커가 이를 거절하자, 동독인들은 반체제 민주화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하였다. 즉 1989년 9월 4일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1,200여명이 참가한 반체제 민주화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순식간에 번져 200만명이 넘는

동독인들의 격렬한 시위는 날로 확산 되어 갔다.

결국 동년 10월 18일 호네커는 18년간의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사퇴하게 되었고, 그 후임에 크렌츠가 취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네커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반체제 민주화시위는 날로 격렬해 지면서 공산정권의 퇴진과 자유총선거의 실시를 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을 수습할 길이 없게 된 크렌츠는 11월 9일을 기하여 마침내 “베를린장벽”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하게 되었다.⁹⁾

사실상 베를린장벽의 전면 개방은 통일상태와 거의 다름이 없었다. 이제 통일을 위해 남은 것은 절차뿐이었다. 동년 11월 13일 크렌츠는 실각되었고, 모드로가 취임하여 연립정부가 출범 되었다.

1990년 3월 18일 모드로의 연립정부는 동독에서의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독의 기민당과 제휴한 동독의 기민당, 즉 “독일연맹”이 압승함으로써¹⁰⁾ 통일의 전도를 밝게 해 주었다. 동독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총선거의 결과는 동독인들의 대부분이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을 희망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1990년 3월 데메지에르 정권이 출범하였으나 급속히 붕괴되는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안정시킬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동독은 동년 5월 18일 서독과 “통화·경제·사회동맹의 창설에 관한 국가조약”을 조인하고, 동년 7월 1일부로 서독과 “경제통합”을 결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은 사실상 동독이 공산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서독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동서독과 미·영·불·소의 4대국 간에 독일통일의 대외관계를 매듭짓는 문제에 관한 “2+4 회담”이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동독에서의 소련군 난관을 조성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독측의 비용부담 등 성의있는 제의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어 동년 9월 12일 “2+4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독의 인민회의(의회)는 동년 8월 23일 서독기본법 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편입 일자를 1990년 10월 3일로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하였다. 즉 찬성 294표, 반대 62표, 기권 7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동독의회는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서독은 동년 8월 31일 “제2국가조약”이라 불리우는 “정치통합”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

9)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해(1994), pp.312~313.

10) 자유총선 결과 각 정당별 의석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의석 400석 가운데 독일연맹 193석(48.2%), 사민당 87석(21.7%), 민사당 65석(16.3%), 자민당 21석(5.3%), 기타 34석(8.5%)으로 되어, 구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은 제3당이 되었다.

은 과정을 거쳐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은 완성되었다.¹¹⁾

끝으로 독일통일은 공산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합의해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의 통행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통일후에는 정치군사적으로 동독군대, 국가기구의 해체를 통해 서독의 권력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자유선거를 통해 통독주민에게는 연방을 구성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구성된 지방정부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토록 하였다. 경제적으로 심했던 동서독의 격차 때문에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그에 따른 재정운영은 물론, 앞으로도 전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회적 통합에서 분단고착에 따른 이질화가 국민통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동독 주민들은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적응치 못하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나찌 출현이라는 사회문제 마저도 들출되었으며,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대거 이주에 따른 주택난, 물가상승, 실업 등의 사회문제도 제기되었다.

다. 남북예멘의 형성과정과 통일

13세기 이집트의 아이유브 왕조의 통치이후부터 예멘은 주위 국가들로부터 침공 및 지배를 받아왔다.

16세기에 북예멘은 자이드 왕조가 자리잡고 18세기 이후 남예멘 지역은 부족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세력권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

1839년 영국의 아덴 침공이후 영국의 칙할식민지 및 보호령 되었다가 그후 계속적인 독립투쟁을 해오다가 1962년 북예멘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예멘 아랍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남예멘은 영국의 철수가 마무리 되어가던 1967년 마르크스주의 색채를 띤 남예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1970년에 예멘 민주인민공화국으로 개칭한 남예멘은 비종교적인 마르크스주의 국가로서 북예멘과 계속 긴장상태로 대치했고, 1970, 1980년 대에 걸친 기간에 여러차례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예멘은 북예멘에 비해 정치불안의 정도가 심각한 편으로 여러번의 쿠데타를 경험했으며, 1986년에는 짧은 기간 지속된 내란으로 수천명이 사망하는 참상을 겪기도 했다.

북예멘이 친서방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던 반면, 남예멘 정부는 당시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89년 남예멘과 북예멘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한다는 합의를

11) 통일연수원, 앞의 책 p.314.

이루는데 성공했다. 각각의 의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북예멘과 남예멘은 1990년 5월 22일 예멘공화국이라는 이름의 통일국가로 새롭게 탄생했다.¹²⁾

합의 통일 이후 예멘은 현실적인 다양한 문제로 남북간의 이해 충돌이 확대되었으며, 마침내는 남북간의 내전이 되었다. 내전은 물리력이 커던 시장경제의 북예멘 주도로 사회주의 남예멘을 통일하였다. 무력통일 후에는 미미한 경제격차 덕분에 통일비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남예멘의 사유화 과정, 투자재원, 인력 및 기술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개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회통합에 있어서 북예멘의 기계적 합의에 따른 문제의 내전적 해결로 인해 조성된 정서적 갈등이나 물질적인 폐해가 커다란 장애요소로 떠올라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단국 베트남, 독일, 예멘의 통일사례를 유형별로 비교해 아래와 같은 분단국 “통일유형 비교”的 표와 같게 될 것이다.

분단국의 통일유형 비교¹³⁾

	베 트 남	독 일	예 멘
체제 분단기간	1955~1975	1945~1990	1967~1990, 1994 통일
양 국 관 계	적대적 대립관계	경제적 대립협력관계	적대·협력 반복
교 류 협 력	실 행 안 됨	원활히 추진	인적교류 가능 간헐적 협력
체제간 이질성	매 우 큼	매 우 큼	약 함
발 전 격 차	거의 없음	커다란 격차	약간 있음
통 일 요 인	체제의 정당성	체제발전격차, 정당성	외적·경제적 환경
통 일 방 식	무력적 흡수통일	평화적 흡수통일	합의통일후 내전적 무력통일
통일후 체제	공 산 주 의	자 본 주 의	이슬람 공화국
통일후 문제점			
정 치	거 의 없 음	없 음	무 力 대 결
경 제	전후 재건비용	막대한 통일비용소요	저성장 악순환
사 회 · 문화	국민통합 문제	사회통합문제 상존	사회혼란 가중

12) Britannica, The New Encyclopaedia, (London, William Benton publisher, 1973), volume 19, p.1084.

13) 황병덕 외, 한국 현 통일 세 모델이 필요하다. (신동아) 8월호 1994, 309쪽 참조하고 예멘의 ‘체제분단’에서 1994년을 통일연도로, ‘통일방식’에서 ‘내전적 무력통일’로 일부 수정, 보충하였다.

2. 분단국의 통일사례에서 나타난 치안문제

가. 월맹의 화전양면적 월남 공산화 통일

베트남의 통일사례에서 교훈되는 치안적 과제는 아래와 간단히 지적 될 수 있다. 먼저, 월맹이 반제노선으로 명분적으로나마 월남에 대해 민족적 주도권을 확립해 갔다는 교훈에서 치안적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대남 반제노선을 통해서 민족적 주도권을 장악 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최근에 북한이 단군릉의 복원을 이용하여 민족적 정서까지도 주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월맹의 대월남 공산화 통일 전략술은 식민지 혁명용인 민족해방인민주주의 혁명전략전술¹⁴⁾이었다는 교훈에서 치안적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식민지 해방의 미제의 앞잡이인 파쇼 통치 타도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한국내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과 차이가 없는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혁명전략전술에 따라 의식화, 조직화, 투쟁화를 통한 나선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은 비인도적 인명살상의 전쟁을 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회복하기 힘든 민족경제 멸실을 결과하였다 는 교훈에서 치안적 과제로 시사 받을 수 있다.

나. 동독의 붕괴를 평화적으로 떠안은 서독의 합의통일

독일의 통일사례에서 교훈되는 치안적 과제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지적될 수 있다. 먼저, 냉전하에서도 양독관계는 협력, 공존관계 였다는 교훈에서 치안적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권붕괴시 발생되는 난민의 유입에 대한 교훈에서 치안적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정권붕괴, 체제붕괴, 그리고 국가흡수의 통일과정을 차분하게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화통일로 이끌었다는 교훈에서 치안적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다.

다. 예멘의 합의통일후 갈등극복의 내전적 무력통일

예멘의 통일사례에서 교훈되는 치안적 과제는 아래와 간단히 지적될 수 있다. 먼저,

14)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 종합인쇄공장, 1975, pp.1~306.

이념의 차이를 이스람의 동질성 아래 묻은 합의통일이라는 기계적인 통합으로써 사실상 내전의 불씨가 되었다는 교훈을 통해서 치안적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합의통일도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확고한 국가안보 없이는 내전의 가능성이 피해지지 않는다는 교훈에서 치안적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분단 3개국의 통일사례와 그에 따른 과제를 밝혔다. 먼저 월남의 공산화, 서독의 자체붕괴된 동독의 평화적 합의통일, 합의통일 후 내전을 거친 예멘통일이라는 사례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통일의 모든 가능성을 망라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투쟁사례에서 시사된 과제는 앞으로 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대남공작화 통일은 물론 합의통일후 내전적 무력통일도 극복하고 평화적 합의통일로 이끌어야 하는 통일경찰의 주요한 원칙이 되는 보안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교훈에서 집단적 탈출의 난민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난민문제는 한반도에서도 발생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에 대비의 선행연구로서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사례로 하는 보안적 접근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III. 한반도 통일방안에 따른 치안여건과 대비 방안

남북의 합의에 따라 공존공영의 통일을 지향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95.8.15. 천명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자주·평화·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통일과정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1민족 1국가 통일단계로 나누었다.¹⁵⁾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는 2체제 2정부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통합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통일헌법에 따라 1민족 1국가를 실현하게 된다.

즉 남북은 불신과 적대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 교류·협

15)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각계각층의 통일논의에 대한 연구, 1995 p.173.

력을 통하여 화해적 공존을 추구하면서 상호신뢰의 토대위에서 단일민족 국가건설을 위한 남북간 공존을 제도화하는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을 구성한 뒤 정치공동체까지 실현시키는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1. 통일방안

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국 통일방안은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천명되었다.

이 방안은 첫째로 그 기본철학이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이며, 둘째로 그 통일원칙은 자주(남북 당사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한), 평화(상대방 전복, 전쟁이 아닌), 민주(모든 민족구성원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한)이며, 셋째로 이러한 통일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이라 하겠다. 민족공동체 통일의 단계과정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화해·협력단계 >

이 단계는 남북이 불신과 적대를 청산하며, 상호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며,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상호간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1) 남북 인적교류분야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후로 꾸준히 인적교류가 증가되다가 북핵문제로 경색되었다. 그러나 95년부터 경수로 타결에 따른 건설준비, 97년도에 지속 추진중인 4자회담, 남북적십자 회의에 따른 대북 쌀공급의 화해분위기 및 그 관련 후속 회담으로 97년 후반기부터 다시 증가될 전망이다.

남북 인적교류는 남북한의 주민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왕래”와 남북한과 제3국 등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만나거나 교신하는 “접촉”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¹⁶⁾ 이 중 남북왕래 교류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1995

16) 통일원, 통일백서, 1995 p.280.

년 10월 말까지 북한방문이 신청 112건(1,383명), 승인 86건 (1,266명), 성사 71건(1,201명)이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신청 15건(607명), 승인 14건(597명), 성사 12건(575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신청·승인·성사 모든 면에서 남한방문보다 북한방문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인적 왕래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1992년도까지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 경색분위기가 고조되던 1993년도와 1994년도에는 현저히 감소하였고, 1995년도에 들어 기업인 방북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3년도까지는 조금식 이루어지다가 1994년 이후 1995년 10월 말 현재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5,230건(12,923명), 승인 4,954건(12,281명), 성사 1,539건(5,059명)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는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과 서신교환, 기업인의 교역상담, 학자들의 제3국 개최 학술회의 참석 등의 순으로 남북접촉이 추진·성사되었다.¹⁷⁾

이러한 순수한 “인적교류”와 “접촉”이 증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부터 응하고 있다. 예를들면 강원도 도의원 3명이 북쪽 강원도 인민위원회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제3국에서 북쪽 인사와 접촉했다는 것이다. 도의원이라면 나라 사정은 물론 조문사과 요구의 억지에 의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의 내용이 담긴 편지까지 1995년 3월 19일에 김정일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95년 4월 28~28일의 평양축전이 범민족대회의 변형이며,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통일방안 확정의 남북 정당, 사회단체와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8.15의 판문점 공동민족대회 및 범민족대회는 통일 전선전략의 일환이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의 8.15판문점 남북공동예배합의문도 남쪽의 비전향 장기수 송환 및 국가보안법 문제는 구체적으로 북쪽의 억류자 송환문제는 애매하게 작성했다는 등이다.

17) 통일원, 앞의 책, p.282.

(2) 남북교역분야

남북교역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경수로 타결과 대북 쌀공급으로 인한 화해 분위기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교역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은 승인기준으로 '89년, '90년의 2천만불대에서 '91~'94년에는 2억불 내외의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95년 들어서는 10월까지 2억 6천만불을 기록하고 있다.¹⁸⁾

통관실적으로는 '89·'90년의 1천만불대에서 '91년에는 1억1천만불, '92~'94년에는 1억 9천만불 수준이었으나, '95년 들어서는 9월 현재 4억6천만불을 기록,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북 지원 쌀 15만톤 중 9월말까지 통관된 147,520톤, 232,975 천불을 제외하더라도 2억 3천만불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54.6%증가하였다.

이러한 남북교역 수준은 남북교역이 그동안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선언과 조치로 진행되어 왔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측의 공식적인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기준으로 약 21억1천만불 내외로 평가되는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작은 규모라 할 수 없다. 특히 '94년 이후 남북교역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95년에도 대부분의 교역이 간접교역형태로 추진되었으나, 반입대 반출비율이 '94년 도에 8.9:1.1인데 비해 '95년도에는 7.6:2.4로 반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반출 증가와 더불어 설당, 밀가루, 라면 등 생필품의 반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회담의 타결로 북한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94. 11. 8. 「남북경제협력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고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시키며, 시범경협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95년에는 위탁가공을 위한 설비(TV 스피커 조립라인)가 처음으로 반출되었고, 기술자 방북과 시범적인 경협사업 승인이 이루어 짐으로써, 향후 남북교역의 질적인 도약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일원과 관세청은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통관관리지침」을 제정·시행('95.4.1) 하여 1) 의류 등 위탁가공 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 완화, 2) 원산지증명서 인증

18) 통일원, 앞의 책, p.289.

범위 완화, 3) 원산지표시 대상 및 방법 명시, 4) 반입승인서 수량보다 초과된 물품의 통관 허용, 5) 제3국 단순경유 입증방법 개선 등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이와 같은 교역의 증가 일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남북간의 직교역보다는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이나 단순한 위탁 가공 수준으로 뮤는등으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취급하고 있다.

(3) 남북협력분야

남북협력사업이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의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인적왕래나 물자교류에 비해 보다 진전되고 심화된 남북교류협력의 형태이다.

남북협력사업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상황하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왔다.

정부는 1994년 10월 제네바 미·북한 핵협상 타결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94.11.28 그동안 잠정유보해 왔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¹⁹⁾

동 조치는 ①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② 위탁가공용 시설재 반출 허용 및 기술자 방북 허용, ③ 시범적인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동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94.12.1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세부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95.6.28에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대북투자시 수반되는 외국환의 송금절차와 현지금융 등의 방법에 의한 자금의 조달절차를 규정하였다.

1995년 10월 말까지 협력사업의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체육분야에서는 '91년 4월 일본 지바현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와 '91년 5월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의 단일팀 구성 등 2건, 학술분야에서는 서울대 이현복 교수의 남북 언어이질화에 대한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의 공동출판에 관한 합의 1건이다.

19) 통일원, 앞의 책, pp.307~308.

경제분야는 활성화 조치 이전에는 '92. 10월에 (주)대우가 남포공단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것이 전부였으나, 활성화 조치 이후에는 '95.5.17 (주)대우의 남포공단 사업 「협력사업」승인, 「고합물산」의 섬유·의류등 4개 사업 「협력사업자」승인을 필두로하여 6.26에는 (주)한일합섬의 봉제 등 4개 사업과, (주)국제상사의 신발제조사업 「협력사업자」승인을 하였고, 9.15에는 (주)녹십자의 의약품제조사업, 동양시멘트(주)의 시멘트 싸이로 건설 사업, 동통해운(주)의 나진항 하역설비 투자사업 「협력사업자」승인을 함으로써 총 6개기업에 대하여 「협력사업자」승인을 하였다.²⁰⁾

(4) 이산가족

이산가족은 순수한 인도적 문제다. 그래서 한국은 개인차원의 서신교환, 상봉신청의 우선적 승인 지원,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등 제3국에서의 생사확인, 편지교환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관련된 쌍방의 합의 또한 마음대로 파기 하는 등이다.

< 2단계 남북연합 >

이 단계에서는 전단계에 구축된 상호신뢰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해 남북이 연합하여 단일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여 궁극적으로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설정을 하고, 남북간의 공존을 제도화 하는 중간과정으로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간다는 단계이다. 즉 남북간의 합의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체계화하여 남북연합의 기구들이 창설·운영되는 것이다.

< 3단계 1민족 1국가 통일 >

이 단계에서는 전단계에 구축된 생활권 바탕의 민족공동체를 정치공동체로 실현시켜 두 체제를 통합하는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한다는 단계이다. 즉,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20) 앞의 책 p.309.

나. 돌발적 통일

- 돌발적 자체 붕괴과정 -

돌발적 통일은 돌발적 사태가 원인이 되어 자체적으로 북한이 붕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에 이르게 되는 통일을 말한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통일을 바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상황이 현실화되었을 때 조차도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먼저, 돌발적 사태로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스스로 붕괴되어야 한다. 즉 식량난, 권력투쟁, 주민들의 의식발전 등에 따른 정권의 통제력이 상실될 경우 등이다.²¹⁾

다음으로 자체 붕괴의 극복방법으로써 북한이 그 주민의 합의에 따른 대남통일을 제안해야 한다. 즉 붕괴된 북한정권이 재건되지 못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어느 쪽의 세력도 체제나 국가를 장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야기되는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등의 해결이라는 절박성 극복방법으로써 한국과의 통일을 다수 주민들의 합의하에 제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합의를 바탕한 대남한 통일제안을 떠맡는 형식으로 국가로서의 북한을 평화적 합의로서 통일한다. 북한의 대한국 합의통일 제안을 한국민 다수의 합의로서 받아들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민족공동체적 통일을 이루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식량, 생필품 등에 대한 요구를 해소해 나가면서 완전한 통일에로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

2. 한반도의 치안여건과 예상되는 과제

통일이 이루어 지기 까지에는 많은 문제와 과제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가지 과제를 치안상의 시각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① 먼저 북한이 그들의 대남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공작적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겠는가하는 문제이다.

둘째, 남한내 탈이념적 사회풍조가 확산되는 반면 이념적 시위나 체제 전복 및 통일 저지를 획책하는 극우테러가 준동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가 더욱 성숙되어지고 통일단계로 이행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1)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1996, p.31.

②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개방 및 통제제도 폐지에 따른 농촌에서 도시에로의 인구 이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생활수준이 높은 한지역으로의 북한지역 주민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된 동포는 물론, 북한출신 부랑, 실업자, 가출 청소년에 의한 사회 범죄가 통일전후에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③ 통일과도기의 범죄는 남북한 상호개방·개혁을 본격화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통일후에도 얼마간 혼란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④ 통일을 전후하여 북한 행정체계가 통합체제로 확립되기 전에 직권을 이용한 공유재산 사유화, 공유물착복, 직권남용은 권력자와 관리층에 의한 경제범죄가 증가 할 것이다.

⑤ 남한 주민들의 북한지역 경제권 선취 및 부당이득을 노리는 투기·사기·불공정 계약 및 거래, 밀수·밀매등이 성행할 것이다.

⑥ 남북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북한기업의 대규모 도산에 따른 실업문제, 그리고 남북지역 주민의 생활격차 등 이질감이나 가치 체계의 혼란, 억압된 사회에서 새로운 자유체제의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폭행 및 생활난 해결을 위한 절도등이 빈발할 것이다.

⑦ 일정기간 남북이 상호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국가가 수립되면 북한이 과거에 몰수 또는 사용을 통제하였고 소유권 및 반 법치 국가적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등에 대한 민원이 폭주할 것이다.

⑧ 남북한 불가침 및 군비감축등의 실현으로 휴전선 및 해상경비 체제의 경찰인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⑨ 남북한 경제사회 공동체의 형성에 따른 법령 및 제도의 개편과 경찰 기능의 조정 및 남북경찰의 통합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3. 대비방안

가. 화해·협력단계

이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를 청산하고 실질적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1) 북한의 정보수집·분석활동 강화

북한이 진정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지 북한의 정치·군사·사회상황등을 상시 분석하고 특히 변동사항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대비하여야 한다. 물론, 공산권 국가의 동향과 이들과 북한과의 관계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관련업무 전담제 운영

남북통일 과업의 차질 없는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외 남북관계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전문부서나 전담관을 두어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 남북 자유왕래에 대비한 보안정보요원 사전 육성
- 북한주민 대량유입시 대책
- 통일 후 북한지역 경찰관서 배치요원 육성등을 전담하게 하고 남북 상주대표부 설치시 기능별 통합대비 업무담당 주재관으로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남북왕래 자유화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기반 구축과 나아가 민족동질성 회복차원에서 자유왕래의 분위기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겠지만 불순한 대남전략 차원의 책동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판문점에 입경수속 관계부처 합동 출입 통제소를 설치하여 범법자등의 유입을 사전에 배제하고 연고지별·행선지별 동향감시 체제와 주민 신고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남한주민의 방북 역시 관계부처와 합동심사 후 허용토록 하고 방북자 안전을 위한 동행과 대북 첨보 수집활동조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귀환자는 주거지 경찰서별로 일정기간 동향 파악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대내적 남북통일 저해요인 발굴·예방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면 이에 편승한 불순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북한내의 김정일 핵심 추종세력등 남한체제 부정·전복획책 세력의 규모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한내 이들과 연계되거나 연계가능한 문제단체·좌익세력등을 철

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반한세력의 국내침입과 국내 반체제 세력과 연계를 차단하는 외사보안 활동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5) 대국민 계도업무의 활성화로 남북동질성 회복 지원

남북한 주민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학교 부터 남북 상호실체 및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남북 연합단계

이 단계는 상호간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단계로 통일이 가시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경찰은 남북의 치안을 남북경찰의 상호협력하에 공동대처 한다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통일국가로서의 치안기반을 구축한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1) 「남북치안협력 위원회」 설치

경찰청에 남북치안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협력 총괄과 협정체결 등을 담당하는 실무조정 협력팀과 치안문제 공동연구팀 그리고 기관간·기능간 교류·자매결연 및 자문을 담당하는 교류, 자문팀을 운영한다.

따라서 화해, 협력단계의 남북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관)는 남북치안협력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에 흡수하게 된다.

이 남북치안협력 위원회에서는

- 치안정보교환 및 범법자 상호인도등 치안관련 협력협정체결
- 기능별 정기교류 추진 및 치안문제 공동연구활동 전개
- 남북 경찰통합 방안과 절차등의 협의, 조정등을 수행하게 된다.

(2) 자유왕래 실현에 따른 경찰지원

남북자유왕래의 안전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왕래에 편승한 범죄꾼들과 통일저해 세력을 발본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남한내 우범자 및 통일반대세력 관찰활동과 대북 첨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범죄단체 또는 범법자의 국내 침입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남북의 중요경찰기관

에 범죄예방 및 검거와 상호협력을 위한 「자문관」을 상호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보호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므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예방활동과 집단민원 및 시위 등 다중범죄 대책도 새로운 차원에서 강구하고 이산가족 재회 주선등 봉사치안 태세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국경 경비체제 개편 대비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로 개선되면 국경경비 업무의 경찰인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경우 해상경비와 육상경비로 구분되는 2원적 국경경비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육상경비는 국경경비단을 신설하여 전담하고 해상경비는 기존의 해양경찰청에 국경경비 기능을 보강하여 전담하게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에 국경경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 또는 국단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경경비단을 신설하여야 한다. 국경경비단의 지휘체계·규모·자원·경비구간 구획·요령등에 대해서 외국사례등을 참고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휴전선 경비의 인수는 휴전선 경계부대의 감축계획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 평화구역 치안대책

남북이 연합단계로 발전되면 평화체제로 개선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평화구역」이 설정될 것이다.

이 평화구역에는 청소년 광장, 각종 경기장, 문화마당, 평화공단과 시장등 많은 평화와 협력·교류시설이 설치되고 각종의 행사가 이루어 지게 되고 이러한 평화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남북이 협력하는 치안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 통일단계

이 단계는 통일헌법에 의하여 1민족 1국가의 남북통합이 실현되는 단계로 과도기 치안 확보와 남북경찰의 통합 및 통일경찰의 발전기반 구축이 중심적 과제가 되리라고 본다.

(1) 가칭 「치안특례법」 제정

단계적 국가통합이라 하여도 과도기의 치안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통일전 단계

부터 통일후 일정시점 까지 발효되는 가칭 치안특례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치안특례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행사에 관한 법적요건과 절차
- 집회 및 사회단체 조직의 절차 및 책임
- 인구 이동등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회보장 수혜절차
- 과도기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법률적 구제
- 재산권 반환 및 과거의 반법치 국가적 인권침해등에 대한 법률적 처리
- 통일 당시 수감자 및 범법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등이 있을 것이다.

(2) 국경 경비체제의 개편

남북이 통일되면 국경의 개념을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휴전선 경비체제를 철수하고 남한의 국경경비단과 북한의 인민경비단을 통합하여 재편성 하여야 한다.

또한 해안경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3) 통일 기초을 다지는 치안활동 강화

통일초기에는 남북상호 방문, 관광객들의 폭발적 증가로 특단의 교통대책을 비롯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반통합주의자의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세력결집을 봉쇄하여 통일국가 건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경찰은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감시·통제기관」으로 뿐리깊게 인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 민주·봉사경찰상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인접국가와 치안협조체제 확립

남북이 통일되면 러시아·중국·일본등 인접국가와 치안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 이므로 범인인도, 공조수사, 치안정보교환, 경찰관 상호교류등 동북아시아 공동치안 체제를 구축하여 공조 치안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5) 경찰통합을 위한 경찰통합 위원회 설치

남북통일 시대의 치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 협력 위원회」를 「경찰통합 위원회」로 개편하고 남북경찰의 혼성으로 구성하다. 이 경찰통합 위원회에

는 구체적 통합추진을 위하여 「조직통합소 위원회」, 「제도·교육통합 소위원회」, 「시설·장비통합 소위원회」, 「경찰행정집행 소위원회」를 두는 외 지역별, 기능별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자문 소위원회」 운영하도록 한다.

IV. 결 어

분단국의 통일 방식으로는 월남의 무력적 흡수통일, 예멘식의 합의통일, 독일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상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멘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제3 체제의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분단국들의 통일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통일후 체제형태가 자유, 평등, 복지, 인간의 존엄성 등이 구현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흡수통일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치안문제를 찾아내고 대비책을 수립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분단국의 통일의 교훈에서 북한정권 붕괴시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내부질서 유지와 외부의 치안문제 담당 기관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치안 인사들이 국경을 맞댄 중국 3성 및 연해주 지역의 치안인사가 꾸준히 상호교류 하므로써 축적된 쌍방간의 인간적 협조체계를 통해 만일에 발생될 수도 있는 통일과정이 돌발적 국경문제 등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주변 각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들과도 적절한 상호교류를 통해 협조치안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외사기능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고 공조 치안기구 구성 및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아무리 평화통일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국가안보는 확고해야 한다는 치안적 과제에 대한 대책은 첫째, 내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민생치안과 함께 공공의 질서가 유지되는 공공치안이 다같이 확립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이념을 묵인한채 민족명분만으로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사실상 기계적일 수 밖에 없음으로써 내전을 임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극복의 치안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國內文獻

1. 著 書

-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각계각층의 통일논의에 대한 연구, 대한문화사, 1995.
- 경찰청, 경찰백서, 범신사, 1996.
- 공성진(외), 미리가본 통일한국, 동화, 1994.
- 구영록, 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 민족통일연구원, 예멘통일의 문제점, 세미나, 써리즈(94-03), 1994.
-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 1996.
-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경제사회(여름), 1995.
- 정용길, “분단국 통일사례”, 보안연수, 1994.
- 통일연수원, 분단국 통일 문제, 1990.
-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해, 1994.
- 통일원,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1996.
- 통일원, ‘95북한개요, 서라벌, 1995.
- 통일원, 통일백서, 정문사, 1995.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 평양 : 종합인쇄공장, 1975.

2. 論 文

- 구종서,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의 제문제”, 북한(9월호), 1993.
- 이장희, “남북연합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적 과제”, 통일로(11월호), 1993.
- 황병덕 외, “한국의 현통일 새모델이 필요하다”, 신동아(8월호), 1994.

■ 外國文獻

- Britannica, The New Encyclopaedia, William Benton publisher (London, 1973), volume19.

ABSTRACT

Expected Policing Problems Following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Countering Measures

By Park, Kee Ryun

The final aim of South Korean policies on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to reflect the direction and the form which South Korean authority has been pursuing.

To achieve this aim, we must establish the forms of reunification and continue to prepare for contingency plans while focusing our effort to those policies.

In pursuing peaceful reunification, the national security should not be neglected. Moreover, the policing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security policies.

In order to draw up more effective policing policies in a reunified state, this dissertation establishes some preparing measures on policing conditions and expected problems resolution from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fter studying similar problems in formerly divided countries.

The chapter one shows the direction of reunification policy.

The chapter two looks some policing problems in formerly divided countries

The chapter three studies the expected policing conditions and preparing measures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chapter four proposes some reasonable solutions for peaceful reunification.